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9 선고 2019가합533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손수연, 김한결

변 론 종 결 2020. 12. 24.

판 결 선 고 2021. 2. 9.

주 문

1. 가.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82,823,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2 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128,270,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사업체에 부과된 아래 기재 합계 379,597,690원의 부가가치세 등(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세목	귀속시기	납세의무의 추상적 성립일	납세의무의 구체적 성립일	체납액(원)	본세(원)	가산금(원)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2018. 9. 30.	2018. 10. 1.	2,900,310	2,569,000	331,310
종합소득세	2018년	2018. 6. 30.	2018. 11. 1.	1,787,760	1,607,000	180,760
종합소득세	2015년	2015. 12. 31.	2016. 5. 31.	12,787,110	11,572,050	1,215,060
종합소득세	2016년	2016. 12. 31.	2017. 5. 31.	46,819,770	42,283,660	4,536,110
종합소득세	2017년	2017. 12. 31.	2018. 5. 31.	13,204,520	11,949,830	1,254,690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5. 6. 30.	2015. 7. 27.	35,755,470	32,357,940	3,397,530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5. 12. 31.	2016. 1. 16.	37,097,100	33,572,040	3,525,060
부가가치세	2016년 1기	2016. 6. 30.	2016. 7. 25.	66,174,330	59,886,340	6,287,990
부가가치세	2016년 2기	2016. 12. 31.	2017. 1. 25.	55,953,870	50,637,060	5,316,810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2017. 6. 30.	2017. 7. 25.	25,967,100	23,499,710	2,467,390
부가가치세	2017년 2기	2017. 12. 31.	2018. 1. 25.	59,138,280	53,518,820	5,619,460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2018. 6. 30.	2018. 11. 16.	16,459,440	15,100,430	1,359,010
근로소득세	2018년 2월	2018. 2. 28.	2018. 2. 28.	5,552,630	5,165,300	387,330
합계				379,597,690원		

나. C은 처인 피고 A 명의 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2015. 9. 9.부터 2018. 10. 29.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 또는

C 명의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부터 피고 A의 F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F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F조합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G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270,657원이 송금되었다.

또한 2016. 1. 12.부터 2017. 12. 27.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로부터 C의 모친인 피고 B의 H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H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F조합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F조합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 F조합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F조합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823,466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 A은 C과 사이에 1명의 자녀(2016년생)를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A의 계좌로 합계 128,270,657원, 모친인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82,823,466원을 각 송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각 피고들에 대한 송금행위를 '피고 ○○○에 대한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피고 A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로 송금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고 A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경리업무를 한 것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C과 피고 A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총무업무를 한 것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피고 B이 C이 이 사건 사업체를 개업하면서

사무실을 임차할 때 C에게 대여한 돈의 변제로 지급받은 돈이므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조세채권에 관하여도 이 사건 사업체(C)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해 있어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사업체(C)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¹⁾.

다. 사해행위의 성립 등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두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2) 피고 A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 또는 C의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피고 A의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대금 등 또는 C과 피고 A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피고 A의 F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된 돈 중 별지3 거래처 송금 내역 등 기재와 같이 합계 27,330,423원은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되거나

C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㉔ 위 27,330,423원을 제외한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송금액은 100,940,234원(= 128,270,657원 - 27,330,423원)인데,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위 나머지 송금액은 C과 피고 A 가족의 생활비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㉕ C과 피고 A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부담해야 하는바(민법 제833조), 피고 A에 대한 송금행위가 있었던 2015. 9. 9.부터 2018. 10. 29.까지 약 37개월 간 피고 A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개월간 I으로부터 임금 등으로 보이는 돈을 지급받은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2), C 또한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C과 피고 A 가족은 사실상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㉖ 같은 기간 피고 A의 F조합(계좌번호 3 생략) 계좌 출금 내역을 보면, 카드대금, 보험료, 적금,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가스로, 아파트관리비 등 가족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㉗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피고 A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3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연평균 약 200만 원을 상회하고3), 위 100,940,234원을 37개월로 나눈 금액은 약 272만 원(= 100,940,234원 ÷ 37개월, 만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 A에게 송금된 금액이 생활비로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㉘ 피고 A에 대한 송금내역을 보면, 2015. 9. 9.부터 2018. 5. 7.까지는 비정기적으로 매월 100만 원~500만 원 내외의 돈이 송금되었고(2017년 4월, 6월, 7월 등 5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이 송금된 달도 존재하나 대개는 위 범위 내의 돈이 송금되었다),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송금된 돈이 없다가 2018년 5월 합계 1,200만 원이, 2018년 6월 합계 1,150만 원이 각 송금되고, 다시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송금된 돈이 없다가 2018년 10월 9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한 번에 큰 금액의 돈이 송금된 적이 거의 없고, 큰 금액이 송금된 달의 경우에도 전후로 수개월간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몇 달치 생활비를 한 번에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생활비를 함께 송금하였다 불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B의 경우

가) C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던 이 사건 차명계좌로부터 2016. 1. 12.부터 2017. 12. 27.까지 피고 B의 각 계좌로 합계 82,823,466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피고 B은 C 가족과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부친이자 위 피고의 남편인 J가 위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총무업무를 하여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근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C로서는 이 사건 사업체에 피고 B이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피고를 정식으로 고용하여 그 급여를 비용처리 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피고 B은 C에게 돈을 대여한 적이 있어 피고 B에 대한 송금행위 중 일부는 뒤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 B에 대한 송금행위를 보면, C이 이 사건 사업체에 부과된 조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번에 300만 원 이상의 돈이 송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 송금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에 대한 송금액 82,823,466원은 C이 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B에 대한 송금행위는 2016. 1. 12.부터 2017. 12. 27.까지 약 2년간 짧게는 수일 길게는 2개월의 근접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② 피고 B은 C의 모친으로 가족관계인 점, ③ C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기 이전에는 피고 B에게 별다른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에 대한 송금행위는 각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에 대한 마지막 송금일인 2018. 10. 29.을 기준으로 C 명의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H은행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의 잔액이 모두 0원이고, 당시 C에게 다른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원고에 대하여 379,597,69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송금행위 당시 C이 무자력이었음이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송금행위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 B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시기, 송금 규모, C과 피고 B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은 피고 B에게 돈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1 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82,823,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지현, 판사 이준석, 판사 강수희

별지1

증여일자	증여액 (송금액)	수증인	수증인 계좌번호	출금계좌번호
2016-01-12	3,000,000			
2016-02-12	3,000,000			
2016-04-11	4,500,000			
2016-05-23	4,000,000			
2016-06-17	5,000,000			
2016-07-19	4,800,000			
2016-08-23	1,000,000			
2016-09-27	546,641			
2016-10-25	546,641			
2016-11-21	9,990,000			
2016-11-23	4,000,000			
2016-11-25	546,641			
2016-12-28	546,641			
2017-01-25	546,641			
2017-02-14	4,500,000			
2017-02-27	546,641			
2017-03-24	1,000,000			
2017-03-27	546,641			
2017-04-24	200,000			
2017-04-25	546,641			
2017-05-25	546,641			
2017-06-19	10,000,000			
2017-06-26	546,641			
2017-07-01	149,670			
2017-07-25	546,641			

2017-07-25	168,770			
2017-08-25	546,641			
2017-09-10	4,800,000			
2017-09-23	168,770			
2017-09-25	546,641			
2017-10-13	2,300,000			
2017-10-25	546,641			
2017-11-10	1,000,000			
2017-11-16	6,000,000			
2017-11-27	546,641			
2017-12-06	4,500,000			
2017-12-27	546,641			
합계	82,823,466			

별지2

증여일자	증여액 (송금액)	수증인	계좌번호	출금계좌번호
2015-09-09	1,000,000			
2015-09-25	500,000			
2015-10-05	900,000			
2015-11-02	30,000			
2015-11-05	990,000			
2015-11-07	990,000			
2015-11-27	2,312,130			
2015-12-09	664,696			
2015-12-09	19,251			
2015-12-10	999,000			
2015-12-29	2,000,000			
2016-01-07	300,000			
2016-01-18	193,650			
2016-01-27	900,000			
2016-01-27	700,000			
2016-01-28	1,000,000			
2016-02-24	2,500,000			
2016-03-07	500,000			
2016-03-22	500,000			
2016-03-28	2,500,000			
2016-04-11	1,720,000			
2016-05-04	2,500,000			
2016-05-21	1,000,000			
2016-06-25	2,800,000			
2016-07-13	50,000			
2016-07-25	2,800,000			

2016-08-19	150,000			
2016-08-25	2,800,000			
2016-08-29	900,000			
2016-09-07	2,500,000			
2016-09-07	150,685			
2016-09-28	2,200,000			
2016-10-25	2,500,000			
2016-11-09	348,000			
2016-11-10	300,000			
2016-11-22	2,050,000			
2016-12-08	1,750,000			
2016-12-28	2,600,000			
2017-02-01	1,000,000			
2017-02-02	500,000			
2017-02-02	1,000,000			
2017-02-24	303,514			
2017-02-27	240,000			
2017-02-28	2,000,000			
2017-03-28	2,000,000			
2017-03-29	3,000,000			
2017-04-20	4,300,000			
2017-04-20	700,000			
2017-04-27	1,000,000			
2017-06-05	2,500,000			
2017-06-13	6,000,000			
2017-07-07	100,000			
2017-07-07	127,877			
2017-07-11	2,000,000			

2017-07-24	4,600,000			
2017-08-10	2,200,000			
2017-09-01	2,300,000			
2017-09-06	1,532,692			
2017-09-19	300,000			
2017-09-29	2,000,000			
2017-10-08	100,000			
2017-10-23	700,000			
2017-10-27	2,000,000			
2017-11-08	256,928			
2017-12-06	2,000,000			
2017-12-06	392,234			
2017-12-28	2,000,000			
2018-05-07	2,000,000			
2018-05-28	10,000,000			
2018-06-06	3,500,000			
2018-06-11	8,000,000			
2018-10-29	9,000,000			
합계	128,270,657			

거래처 송금 내역 등

(출금 계좌 : 피고 A 명의 F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순번	송금일시	송금액(원)	송금계좌 및 내용
1	2016. 9. 13.	120,000	K
2	2016. 9. 13.	320,000	K
3	2016. 9. 19.	410,000	L
4	2016. 9. 13.	3,130,000	M
5	2017. 3. 2.	852,000	㈜N
6	2017. 7. 15.	2,080,000	O
7	2018. 5. 28.	4,643,100	P(Q)
8	2018. 5. 28.	1,674,150	R(주)
9	2018. 5. 30.	2,800,000	S
10	2018. 5. 30.	1,870,000	T
11	2018. 6. 11.	4,207,173	U(주)
12	2018. 6. 16.	638,000	V(W)
13	2018. 6. 16.	420,000	㈜X
14	2018. 6. 21.	4,166,000	기업은행 대출금 이자
합계		27,330,423원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 11. 13.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2016년 1월부터 수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3)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2019년도 기준 약 225만 원, 2020년도 기준 약 232만 원, 2021년 기준 약 239만 원으로 매년 6~7만 원씩 상승하고 있다.